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9년 12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 감사인 선임시 반드시 챙겨야 할 7 가지 체크포인트

세무 및 법률정보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Tax Tips: 증여재산공제제도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출처: 금융감독원, 2019. 12. 19]

개요

I. 개요

◆ (회사) 최근 3년간('15~17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모두 105사입니다.

◦ (회사유형별) 주로 비상장법인(101사)이 인력부족, 법규인식 미비로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주권상장법인은 4사가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대부분 코넥스법인이어서 상장폐지되었음

◦ (자산규모별) 위반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36.2%)이거나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28.6%) 등 소규모·한계기업이 다수

◦ (감사의견별)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의견이 73.4%를 차지

◆ (내부회계관리자) 이사회 등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 위반 9건 중 기업회생절차 신청 및 개시 등 현실적으로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웠던 경우(7건)가 많았습니다.

◆ (감사인) Big 4를 제외한 중견·중소형 회계법인(20사)이 법규오인,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 등 의무 위반이 발생하였습니다.

◆ (행정제재) 총 13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사항 중 33건(회사 16사, 내부회계관리자 5인, 감사인 12사)에 대하여 300 ~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新외감법 시행으로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전환, 연결기준 구축, 보고주체 및 보고대상 변경 등 개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별도로 표명하여야 함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II.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지칭합니다. *(외감법 제8조 제1항)

*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 (목적) 회사는 구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 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

- 회사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적용대상)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규정(외감법 제8조) >

구분	내용
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대표자(내부회계관리자)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감사(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상장법인은 감사)하여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 표명

- (법규위반시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회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인 등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외감법 제47조 제2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 분석**

III. 점검결과 분석

- (총괄) 2015 ~ 2017회계연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34건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 ‘19.5.22(2015회계연도) 및 ’19.12.11(2016 및 2017회계연도) 증선위에서 아래와 같이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 2018.11.1. 외감법시행령 별표2 및 외감규정 별표9 「과태료부과기준」 참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위반회사 점검 결과

회계연도	내부회계 미구축		내부회계 미보고		검토의견 미표명		위반 합계	
	회사	과태료 면제*	내부회계 관리자	과태료 면제*	감사인	과태료 면제*		과태료 면제*
2015	34	28	5	3	6	1	45	32
2016	35	28	2	1	10	3	47	32
2017	36	33	2	-	4	4	42	37
계	105	89	9	4	20	8	134	101

* 과태료 면제 사유는 SPC, 회생절차, 폐업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임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위반

□ (회사유형별) 주권상장법인은 4사(3.8%, 코넥스 3사, 코스닥 1사)에 불과하고 위반회사 대부분은 비상장법인(101사, 96.2%)입니다.

◦ 주권상장법인은 일부 코넥스법인(익년에 상장폐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 비상장법인의 경우 관리적 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비,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한 지속적 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의무 위반이 발생

상장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위반회사 수	비율	위반회사 수	비율	위반회사 수	비율	비율	비율
코스닥	1	2.9	-	-	-	-	1	1.0
코넥스	1	2.9	1	2.9	1	2.8	3	2.8
비상장법인	32	94.2	34	97.1	35	97.2	101	96.2
합계	34		35		36		105	

□ (자산규모별) ①자산총액 1,000억원(위반행위시 기준) 미만(38사, 36.2%)이거나 ②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은 경우(30사, 28.6%) 등 소규모·한계기업이 다수(6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전기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이었으나 당기 중 재무상태 악화, 폐업 등으로 익년도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규 준수의 유인이 낮아 의무 위반 발생

위반행위 당시 자산총액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위반회사 수	비율	위반회사 수	비율	위반회사 수	비율	비율	비율
2,000억원 이상	5	14.7	1	2.9	2	5.6	8	7.6
2,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7	20.6	12	34.3	10	27.8	29	27.6
1,000억원 미만	18	52.9	11	31.4	9	25.0	38	36.2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 미제출	4	11.8	11	31.4	15	41.7	30	28.6
합계	34		35		36		105	

* 폐업회사 중 다수(23사)는 일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산유동화회사(SPC)로 舊외감법상 외감대상회사임

□ (감사의견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는 당해연도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비율이 73.4%를 차지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등 전반적인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거나, 열악한 재무구조 등으로 적절한 회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된 회사가 다수이고,

- 부실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감사의견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위반회사 수	비율	위반회사 수	비율	위반회사 수	비율		비율
적정	11	32.4	9	25.7	8	22.2	28	26.6
한정	1	2.9	-	-	-	-	1	1.0
부적정	-	-	1	2.9	1	2.8	2	1.9
의견거절	22	64.7	25	71.4	27	75.0	74	70.5
합계	34		35		36		105	

□ (과태료 부과 여부) 위반회사 105사 중 16사(15.2%)에 대하여 300 ~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89사는 과태료가 면제되었습니다.

◦ (면제사유)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35.2%)이거나 기업회생(9.5%), 폐업 등(40%)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 면제

과태료 부과 여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위반회사 수	비율	위반회사 수	비율	위반회사 수	비율		비율
과태료 부과		6	17.6	7	20.0	3	8.3	16	15.2
과태료 면제	기업회생	4	11.8	3	8.6	3	8.3	10	9.5
	임직원 5인 이하	19	55.9	10	28.6	8	22.2	37	35.2
	해산·청산·폐업	5	14.7	15	42.9	22	61.1	42	40.0
합계		34		35		36		105	

* 외감법시행령 별표2 및 외감규정 별표9 「과태료부과기준」 4. 및 6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 위반

□ 당기 중 혹은 익년 초(3개월 이내)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현실적으로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총 9건 중 7건)입니다.

◦ 당기 중 기업회생절차를 신청(준비)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

위반 사유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위반 건수	비율	위반 건수	비율	위반 건수	비율		비율
당기 중 회생절차 (과태료 면제)	2	40.0	1	50.0	-	-	3	33.3
익년 초 회생절차 (과태료 감경)	2	40.0	1	50.0	1	50.0	4	44.5
SPC (과태료 면제)	1	20.0	-		-	-	1	11.1
법규인식 부족	-	-	-		1	50.0	1	11.1
합계	5		2		2		9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

□ (회계법인 규모별) 위반 감사인 20사 중 대형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은 없고, 중견 회계법인은 5사(25%), 중형 회계법인은 7사(35%), 소형 회계법인(감사반 포함)은 8사(40%)입니다.

※ 공인회계사수 600인 이상은 대형, 120인 이상(600인 미만)은 중견, 60인 이상(120인 미만)은 중형, 60인 미만은 소형 회계법인으로 구분함('19.3월말 기준)

□ (과태료 부과 여부)위반 감사인 20사 중 12사(60%)에 대하여 300 ~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8사(감사반 청산, SPC)는 과태료가 면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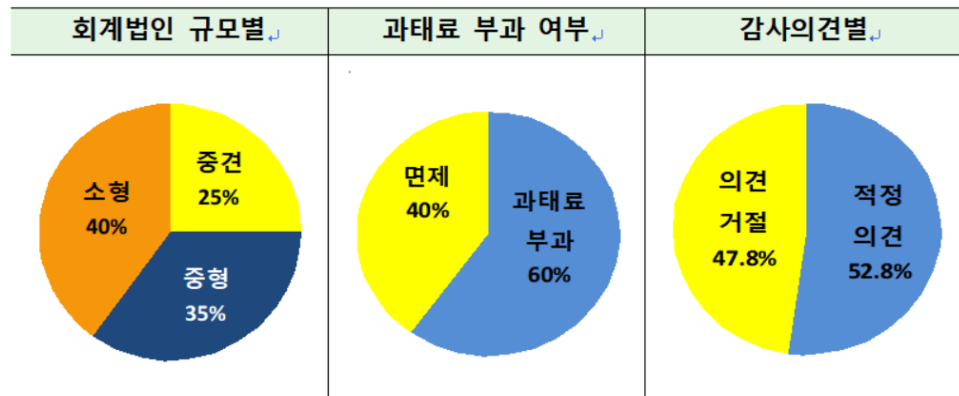
◦ 회사의 과태료 면제사유(회생절차 개시, 임직원 5인 이하)가 회계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의무위반시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됨

□ (감사의견별) 위반건수 23건* 중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이 12건(52.2%), 의견거절이 11건(47.8%)이었습니다.

* 회계법인 3사는 감사보고서상 검토의견 미표명 위반 건수가 각각 2건임

◦ 다수의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의무 위반 발생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위반(20사, 23건) 분석



유의사항

IV. 유의사항

가. 新 외감법상 제도 변경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구 분	舊 외감법	新 외감법('18.11.1. 시행)
보고주체	상근임원 (내부회계관리자)	<u>대표자</u> (내부회계관리자)
보고처	감사, 이사회	<u>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u>
감사의 책임	운영실태평가, 이사회 보고 등의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규정 없음	<u>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주주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u>
구축범위	개별회사 재무정보	<u>연결회사</u> 재무정보 ※ 2022년도부터 단계적 확대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	검토	<u>감사(상장법인)</u> ※ 2019년부터 단계적 확대

※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 ‘신외감법 시행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2018.9.17.)’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 필요(2018.12.17.)’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사의 과태료 면제사유가 감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 면제사유는 **회사의 특수성**(회생절차 개시, 임직원 5인 이하 등)을 **감안하여 제도 구축·운영 등이 곤란하다고** 보아 적용되지만,
 - 감사인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시 **부적정 검토의견 등을 표명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음**

다.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 관련 의무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과 무관하게**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감사인은 이에 대한 **검토(감사)의견 표명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라. 위법사실의 재발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위반회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로부터 **5년 내 재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이 20% 가중**될 수 있음

마.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의 경우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지 않거나, 감사가**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감사의 차이점

□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사의 규모에 따라 '19년부터 순차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됩니다.*

* 감사의무화 시점 : '19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 → '20년(5천억원~2조원) → '22년(1천억원~5천억원) → '23년(1천억원 미만)

◦ (검증대상)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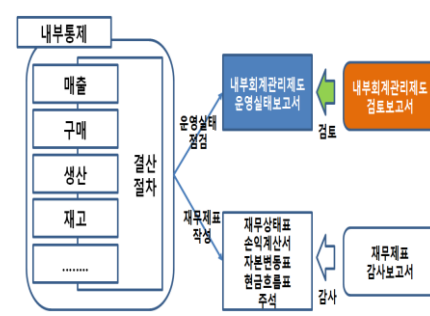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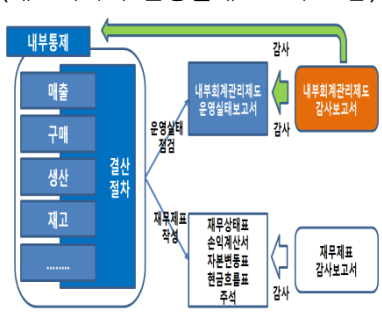
* 점검결과, 미비점 및 시정계획, 직전년도 시정조치 이행결과 등이 포함

-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

◦ (수행절차)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하는 반면,

- '감사'는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하여 재수행하거나 회사의 통제활동을 현장에서 관찰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 수행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 비교

	검 토	감 사
검증 대상	<p>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p> 	<p>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포함)</p> 
수행 절차	<p>질문 위주 (또는 제한된 수준의 문서검사)</p>	<p>통제절차의 재수행, 문서검사, 관찰, 질문</p>

감사인 선임
7가지 체크포인트

감사인 선임시 반드시 챙겨야 할 7 가지 체크포인트

[출처: 금융감독원, 2019. 1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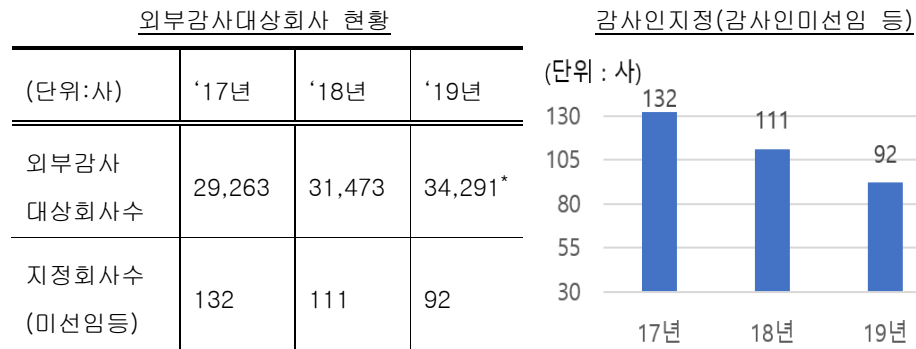
배경

I. 배경

□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등이 변경되었지만, 일부 회사는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중전)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 (개정)사업연도 개시 후 45일(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단 초도감사는 기존대로 4개월)

° '19년에 감사인미선임,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92사가 지정되었으며, 과거 3년간 연평균 111사가 지정됨



*외부감사대상회사수는 '19.11월말 기준

⇒ 이에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기업들이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크포인트를 안내하고자 함

주요 체크포인트

II. 주요 체크포인트

□ 외부감사법의 개정으로 크게 변경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대상 확대,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강화 등과 관련 7가지 체크포인트(붙임 1)를 선정하였습니다.

° 회사는 감사인 선임시 해당내용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

[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체크포인트 7가지]

1.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산이 천억원을 넘는 경우 감사인 선임절차(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가 엄격해 집니다
4.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5. 회사의 내부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6.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7. 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전자보고해야 합니다

향후 계획

III. 향후 계획

□상장협, 상공회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각 회원사**에 주요 **체크포인트, 선임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을 **상담**(☎ 02-3145-7763/7765)하는 등 **교육·홍보*** 예정

*기업·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1월 중 「외부감사제도 전국순회설명회」 실시

감사인선임
주요 체크포인트

※ (붙임1) 감사인 선임 관련 7가지 주요 체크포인트

감사인 선임기한

1.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규정)외부감사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기한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며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위탁)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다만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전,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로 선임기한이 상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 2조원) 미만 보험회사 등을 제외한 금융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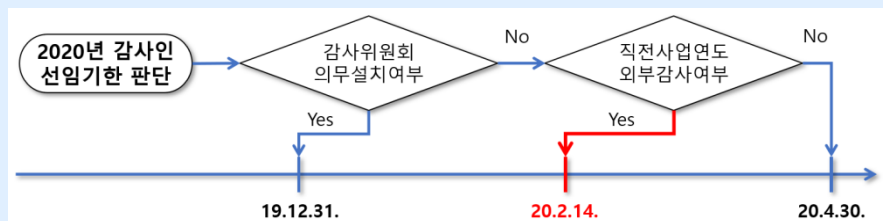
□(놓치기쉬운사항)감사인 선임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에서 45일*로 대폭 단축된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어 주의 필요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체크포인트 1

◆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선임기한 위반시 지정될 수 있어 주의필요

◦특히,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점에 주의할 필요



외부감사대상
변화

2.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주권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포함), 소규모 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와 유한 회사('20년부터)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상장사의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외부감사 제외대상 소규모회사	(소규모 회사:3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소규모 회사:3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사원수 50명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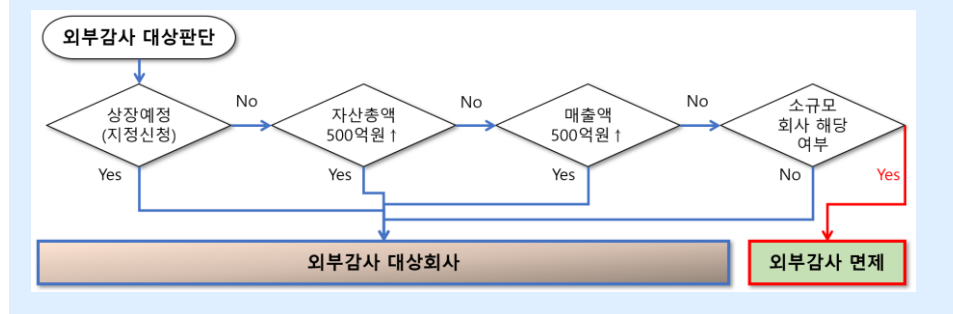
*주식회사가 '19.11월 이후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 향후 5년간 외부감사 대상여부는 주식회사 기준에 따라 판단(외부감사법 시행령 §5)

□(놓치기쉬운사항)전기까지 외부감사를 받지 않던 회사라도 자산, 부채의 증가 등으로 올해에는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

◦특히, 외부감사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외부감사대상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종종 있음

체크포인트 2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이 120억원 미만이라도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매년 외부감사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자산이 천억원을 넘
는 회사의 감사인
선임절차

3. 자산이 천억원을 넘게 되면 감사인 선임절차가 엄격해 집니다

□(관련규정)비상장사라도 전기말 자산 1천억원 이상인 회사(대형비상장사)는 상장사에 준*하는 강화된 선임절차 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외부감사 대상 금융회사도 동일함

◦(감사인 선임권자)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미설치)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선임기간)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감사인으로 선임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의 경우 상장사와 달리 등록된 회계법인에게 감사받을 필요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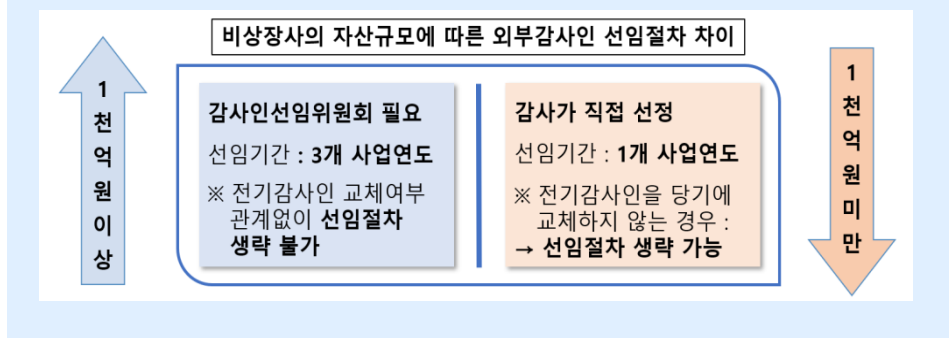
□(놓치기쉬운사항)전년도('19년)에 처음으로 자산(별도기준)이 1천억원*을 넘게 된 회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등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되므로 주의 필요

*[실제사례] 비상장사 A사는 '18년말 자산이 980억원이었으나, '19년말에 1,020억원으로 증가하여 '20년부터 대형비상장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 경우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위탁)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체크포인트 3

◆ 전년도('19년)에 처음으로 자산이 1천억원을 넘게 된 회사는 당기('20년)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선임절차 확인필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4.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관련규정)감사위원회가 없는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금융회사는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령상 이해관계자별 **위원수*에 부합하게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내부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명, 회사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의 임원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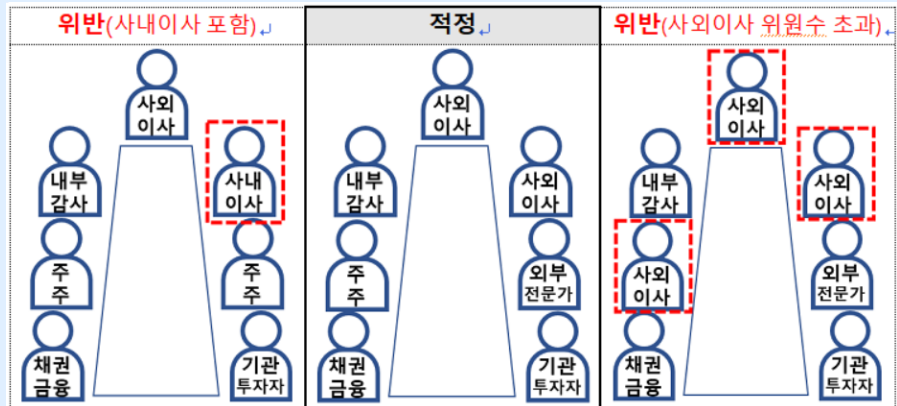
□(놓치기쉬운사항)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원(예:사내이사, 재무담당임원)이 **위원에 포함**되어 있거나

◦법령상 이해관계자별 **위원수를 초과***하거나 또는 **전체 위원수가 7인 미만일** 경우 등은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되므로 주의 필요

* (예)사외이사인 위원이 3명 이상인 경우 또는 내부감사가 2명 이상인 경우

체크포인트 4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령상 이해관계자별(사내이사, 재무담당임원 X) 위원수에 부합하게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함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

5. 회사의 내부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게 원칙이며,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내부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결정합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들이 투표로 위원장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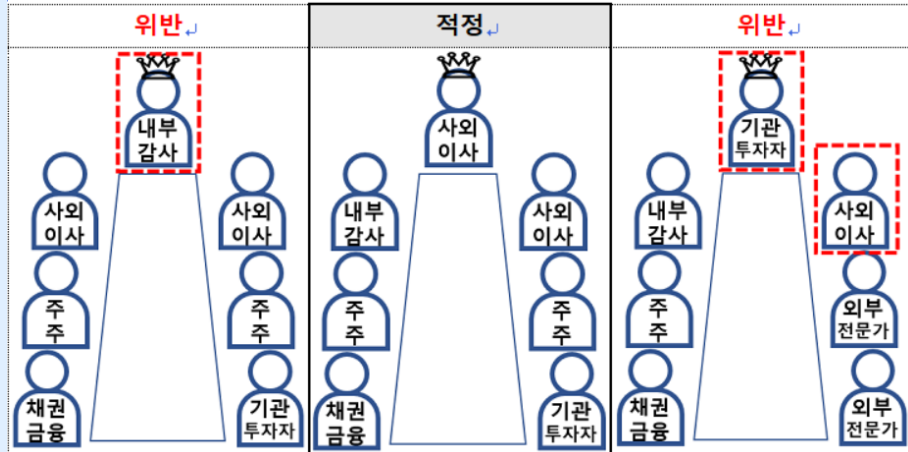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원장이 될 수 없음

□(놓치기쉬운사항)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사외이사가 아닌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되므로 주의 필요

체크포인트 5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말아야 하며,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내부감사를 제외한 위원중에서 임명해야 함



감사인선임위원회의 6.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의 및 의결요건

□(관련규정)감사인선임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적위원 중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의사정족수)합니다.

*감사 1명,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투자자(임직원) 1인과 주주 2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임원 등 제외), 채권액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경우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의결정족수)

*예를 들어, 감사인선임위원회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 최소 5명이 출석해야 하며, 5명이 출석했다면 이 중 최소 3명이 찬성해야 함

□(놓치기쉬운사항)감사인선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거나

◦또는, 찬성인원이 출석인원의 과반수보다 적은 경우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되므로 주의 필요

체크포인트 6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제적위원 중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가능

위반(의사정족수 미달)			적정			위반(의결정족수 미달)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참석	찬반	위원	참석	찬반	위원	참석	찬반
1. 김○○	김	찬성	1. 김○○	김	찬성	1. 김○○	김	찬성
2. 이○○			2. 이○○			2. 이○○		
3. 박○○	박	찬성	3. 박○○	박	찬성	3. 박○○	박	찬성
4. 정○○			4. 정○○			4. 정○○	정	찬성
5. 최○○	최	찬성	5. 최○○	최	찬성	5. 최○○	최	반대
6. 강○○			6. 강○○	강	반대	6. 강○○	강	반대
7. 윤○○	윤	찬성	7. 윤○○	윤	반대	7. 윤○○	윤	반대

감사인 선임보고 7. 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전자보고해야 합니다

□(관련규정)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위탁) 감사인 선임보고(지정감사 제외)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장법인 등*의 감사계약 2·3차연도인 경우와 중소형비상장사 중 전기감사인을 당기에 교체하지 않은 경우 제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대형비상장사)와 금융회사 포함

회사 및 감사인의 보고의무

구 분	계 약 유 형	감사차수	감사인 보고의무	회사 보고의무
상장법인,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초도감사, 감사인 변경	1 차연도	○	○
		2,3 차연도	○	X
	계속감사	1 차연도	○	○
		2,3 차연도	○	X
중소형 비상장회사	초도감사, 감사인 변경		○	○
	계속감사		○	X

□(놓치기쉬운사항)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보고(전자방식)를 하지 않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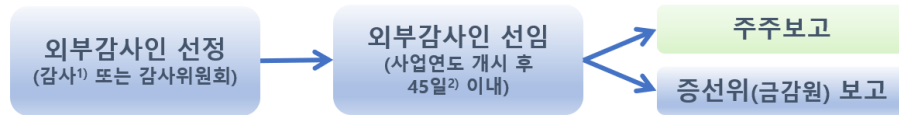
◦감사계약서 사본과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등 필수 첨부서류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

감사인 선임보고시 첨부서류
<p>① 선임보고 공문, ② 감사계약서 사본, ③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④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사록) ⑤ (감사인 변경 시)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p>

체크포인트 7
 ◆회사는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전자방식으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함

감사인 선임절차 ※ (붙임 2) 감사인 선임절차

1. 감사인 선임절차 개요



- 1)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후 감사가 선정
- 2)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단 초도감사는 기존대로 4개월

2. 감사인 선정주체 및 선임기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사인 선임

회사 구분		선정주체	선임기한²)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¹)		감사위원회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이외)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감사위원회 미설치회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후 감사가 선정	
그 밖의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 1)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 2조원) 미만 보험회사 등을 제외한 금융회사
- 2)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3. 감사인 선임보고

(주주보고)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

(증선위보고)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전자신고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
정 국무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12.24(화)에 개최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12.10(화) 국회 본회의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19.8.29 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경과조치 규정(소득법 §2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신 설> ○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 (2 배) *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 평균급여	<input type="checkbox"/> 경과조치 규정 신설 ○ '12.1.1.~'19.12.31 까지 적용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 배수 유지 ○ (임원 퇴직소득 한도) '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19년 근속연수 × 지급배수(3 배) + 퇴직전('20년 이후) 3년간 평균급여 × 1/10 × '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2 배)

< 수정이유 > 개정안 시행 전 적용된 퇴직소득에 대한 신뢰보호

2. 접대비 한도 상향(법인법 §25의 4, 소득법 §35)

현 행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2,4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input type="checkbox"/>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 ○ 중소기업 기본한도 상향 - (좌 동) -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수입금액 구간	한 도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2 퍼센트	100억원 이하	0.3 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100억원 초과분의 0.1 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100억원 초과분의 0.2 퍼센트)
500억원 초과	6천만원 +(500억원 초과분의 0.03 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 1천만원 +(500억원 초과분의 0.03 퍼센트)

< 수정이유 >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 시행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제도 보완(조특법 §13의3)

정 부 안	수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p> <p>○ (대상)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p> <p>○ (인수방법) 주식취득</p> <p>○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다수의 내국법인이 공동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각 요건은 내국법인별로 판단함</p> </div> <p>-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 M&A</p> <p>-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p> <p>-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 + 경영권) 초과</p> <p>○ (공제율) 인수금액의 5% (중견 7%, 중소 10%)</p> <p>- 인수금액 총 공제대상 한도(건당) =Min[총 인수금액, 5천억원]</p> <p>○ (적용기한) '22.12.31.</p>	<p><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적용 대상·요건 보완</p> <p>○ (좌 동)*</p> <p>*단순 재무적투자자(금융·보험업자)는 제외</p> <p>○ 주식취득 + 자산·사업양수</p> <p>○ 인수요건 완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다수의 내국법인이 공동인수시 내국법인들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판단</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 + 경영권) 이상</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 수정이유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M&A 세제지원 제도 보완

< 시행시기 > '20.1.1. 이후 출자·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한시사항 기간 연장(조특법 §25)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년간('20.1.1.~'20.12.31.) 한시 상황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기간</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대</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중견</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중소</th> </tr> </thead> <tbody> <tr> <td>① '20년 투자분</td> <td>2%</td> <td>5%</td> <td>10%</td> </tr> <tr> <td>② ① 이후</td> <td>1%</td> <td>3%</td> <td>7%</td> </tr> </tbody> </table> <p>○ (적용기한) '21.12.31.</p>	기간	대	중견	중소	① '20년 투자분	2%	5%	10%	② ① 이후	1%	3%	7%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에 대해 공제율 한시사항 기간 연장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기간</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대</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중견</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중소</th> </tr> </thead> <tbody> <tr> <td>① '20년 투자분</td> <td>2%</td> <td>5%</td> <td>10%</td> </tr> <tr> <td>② '21년 투자분</td> <td>1%</td> <td>5%</td> <td>10%</td> </tr> <tr> <td>③ ②이후</td> <td>1%</td> <td>3%</td> <td>7%</td> </tr> </tbody> </table> <p>○ (좌 동)</p>	기간	대	중견	중소	① '20년 투자분	2%	5%	10%	② '21년 투자분	1%	5%	10%	③ ②이후	1%	3%	7%
기간	대	중견	중소																										
① '20년 투자분	2%	5%	10%																										
② ① 이후	1%	3%	7%																										
기간	대	중견	중소																										
① '20년 투자분	2%	5%	10%																										
② '21년 투자분	1%	5%	10%																										
③ ②이후	1%	3%	7%																										

< 수정이유 >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황을 통한 투자유인 제고

5.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조특법 §87의 7, §89의 2)

현 행	수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및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 (과세특례) 투자액 5천만원 이하 9% 분리과세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 3년 미만 투자시 감면세액 추징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부족액의 10% 가산세 부과 ○ (적용기한) '21.12.31.

< 수정이유 >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6. 기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대상 확대(조특법 §30 의 6)

현 행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업승계 증여세 특례 ○ (내용) 100 억원을 한도로 5 억원을 공제한 후 저율과세* * 30 억원 까지 10%, 초과분 20% ○ (요건) 사업을 경영한 60 세이상 부모로부터 주식등을 증여받고,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대상) 사업을 승계하는 1 인에 대해서만 특례 적용	<input type="checkbox"/> 특례 적용 대상 확대 ○ (좌 동) ○ 사업을 2 인 이상이 승계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 이 경우 1 인이 승계하는 경우와 총 세 부담이 같도록 각 승계자의 증여세액을 계산* * 구체적 계산방식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수정이유 > 공동승계 등 사업의 유연한 승계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임대주택을 2 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축소(조특법 §96)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 단,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이내 ○ (감면율) 임대기간에 따라 4년/8년 이상 30%/75% → 20%/50% ○ (적용기한) '22.12.31.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2 호 이상 임대사업자에 한해 세액감면을 축소 ○ (좌 동) ○ 임대주택 1 호: 30%/75% 임대주택 2 호 이상: 20%/50% ○ (좌 동)

< 수정이유 >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내국법인의 배당시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하여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 「한-홍콩 조세조약」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600, 2019.12.10)

(질의요지)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 적용대상여부

(회신)

내국법인의 배당시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하여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소액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을 초과한 배당으로 발생한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28, 2019.11.08)

-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 청구법인은 해당 국가들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대상조세로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경우에 대해서만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상대방과의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등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으므로 위 조약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 조세조약」 등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조약에서 구체적인 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 등과 이종으로 공제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처분청들이 임의의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일정율을 공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구체적인 공제액을 산정할 수 없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8지893, 2018.9.6., 같은 뜻임),

-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제5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등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고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조약의 일반원칙에 반하거나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이중과세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Tax Tips:
증여재산공제제도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남편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증여자	공제금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2015. 12. 31. 이전에는 3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 (2015. 12. 31. 이전에는 5백만 원)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한도액이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타친족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3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 2명만 있는 사람

1) 10년 전에 증여

사망하기 전 10년 전에 자녀에게 각각 3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9억 원(상속재산 24억 - 일괄공제 5억)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6억원이 됩니다. 증여세는 자녀 각각 4천만원씩 총 8천만원부담하여 총 부담세액은 6억 8천만원이 됩니다.

2) 10년 이내에 증여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각각 3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 원(상속재산 24억+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6억 - 일괄공제 5억)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8억 4천만 원이 되어 증여를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기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